

주주님께

제 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정관 제 19조에 의거 제 5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3년 03월 24일(金요일) 오전 09시 00분
2. 장 소 : 서울 서초구 우면동 4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 : (1)감사 보고 (2)영업 보고 (3)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나. 부의안건

1) 제 1호 의안 : 제 51기 (2022.01.01 ~ 2022.12.31)

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- 1주당 예정 배당금 : 100원

2) 제 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 [별첨1]

2) 제 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- [별첨2]

3-1. 사내이사 선임의 건(중임)

3-2. 사내이사 선임의 건(신규선임)

3) 제 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승인의 건 - [별첨2]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조의4와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증권예탁원(증권대행부),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 행사를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

* 본 주주총회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3년 03월 08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5 (화민빌딩)



[별 첨 1]

● 제 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8조 【주권의 종류】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 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증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.	제 8조 【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】 좌동	내용과 대응되는 제목으로 변경
제30조 【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】 1-③-간,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	제30조 【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】 1-③-라. 삭제 1-⑤. 총급여액 :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입원에게 지급한 급여, 일금, 보수, 상여,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임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합계액을 말한다. 다만, 성과보상급여 등 고과 및 평가에 의한 급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.	 법인세법 시행령 최신화 -제 44조 4항 삭제 -제 43조 1항 변경
제32조 【이사의 직무】 2.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32조 【이사의 직무】 2.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입원 현황에 따른 변경
제 32조의 2【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간접】 1) 생략 2)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결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1 페이지 제 32조의 2【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간접】 1) 좌동 2)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결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조(이사들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상법 최신화에 따른 문구조정
제 34조 【이사회의 결의 방법】 2), 3), 4) 생략 1)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한다.	제 34조 【이사회의 결의 방법】 2), 3), 4) 좌동 1)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들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한다.	상법 최신화에 따른 문구조정

[별 첨 2]

● 제 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 2명)

선임 이사 : 2인

이사 후보자 명단

구분	성명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임기
사내이사	배종민	(주)N.I스틸 대표이사	이사회	없음	없음	3년
사내이사	이창환	(주)N.I스틸 임원	이사회	없음	없음	3년

● 제 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51기 한도승인 요청액 : 50억원(제50기 한도승인액 : 30억원)

- 이사의 수 : 총 3인(中 사외이사 1인)

주 총 참 석 장

일 시 : 2023년 3월 24일 (금) 9시

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
제51기 (주)N.I스틸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.

(주)N.I스틸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.

소유주식수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주 명 :

※ 대리인 위임장

대 리 인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.

위 임 자 :

(인)
